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주석령 [2020] 제 58 호
- 제 정 일: 2020년 10월 17일
- 공 포 일: 2020년 10월 17일
- 시 행 일: 2020년 12월 1일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관리·통제 정책, 관리·통제 목록과 관리·통제 조치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 절 이중용도품목 수출 관리

제 3 절 군용물 수출 관리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4 장 법적 책임

제 5 장 부칙

원문	번역문
----	-----

<p>第一章 总则</p> <p>第一条 为了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加强和规范出口管制，制定本法。</p> <p>第二条 国家对两用物项、军品、核以及其他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相关的货物、技术、服务等物项（以下统称“管制物项”）的出口管制，适用本法。</p> <p>前款所称管制物项，包括物项相关的技术资料等数据。</p> <p>本法所称出口管制，是指国家对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向境外转移管制物项，以及中华人民共和国公民、法人和非法组织向外国组织和个人提供管制物项，采取禁止或者限制性措施。</p>	<p>제 1 장 총칙</p> <p>제 1 조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규제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p> <p>제 2 조 국가는 이중용도품목¹·군용물·핵물질 및 국가안보와 이익과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에 관련된 그 밖의 화물·기술·서비스 등 물품 및 항목 (이하 "통제대상품목"²)라 한다) 수출 관리·통제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앞 관에서 말하는 통제대상품목에는 물품 및 항목에 관련된 기술 자료 등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수출 관리·통제란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국경 밖으로 통제대상품목을 이전하는 것, 중화인민공화국 공민·법인·법인이 아닌 조직이 외국 조직과 개인에게 통제</p>
------------------------------------------------------------------------------------------------------------------------------------------------------------------------------------------------------------------------------------------------------------------------------------------------------------	-------------------------------------------------------------------------------------------------------------------------------------------------------------------------------------------------------------------------------------------------------------------------------------------------------------------------------------------------------------------------------------------------------------------------------------------------------

*제 2 조에서 말하는 "两用物项"이란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이며, 민간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 2 조에서 말하는 "管制物项"이란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items)이다.

本法所称两用物项，是指既有民事用途，又有军事用途或者有助于提升军事潜力，特别是可以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的货物、技术和服务。

本法所称军品，是指用于军事目的的装备、专用生产设备以及其他相关货物、技术和服务。

本法所称核，是指核材料、核设备、反应堆用非核材料以及相关技术和服务。

第三条

出口管制工作应当坚持总体国家安全观，维护国际和平，统筹安全和发展，完善出口管制管理和服务。

第四条

国家实行统一的出口管制制度，通过制定管制清单、名录或者目录（以下统称管制清单）、实施

대상품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이중용도품목이란 민간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군사 용도로 사용되거나 군사력 증강을 돕기도 하며,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이를 탑재하는 운반수단의 설계·개발·생산·사용에 쓰일 수 있는 화물·기술·서비스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군용물이란 군사목적의 장비·전용 생산설비·이와 관련된 그 밖의 화물·기술·서비스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핵물질이란 핵물질·핵시설·원자로용 비핵물질·이에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이다.

제 3 조

수출 관리·통제 업무는 총체적인 국가안보 관점을 견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안전과 발전을 모두 총괄하도록 수출 관리·통제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수출 관리·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통제 목록·명부·색인 (이하 "관리·통제

出口许可等方式进行管理。

第五条

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承担出口管制职能的部门（以下统称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出口管制工作。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出口管制有关工作。

国家建立出口管制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出口管制工作重大事项。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和国务院有关部门应当密切配合，加强信息共享。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建立出口管制专家咨询机制，为出口管制工作提供咨询意见。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适时发布有关行业出口管制指南，引导出口经营者建立健全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规范经营。

목록"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수출허가 시행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 5 조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수출 관리·통제 직무·기능 담당부서 (이하 "국가수출통제관리부"라 한다) 는 직무 및 책임에 따라 수출 관리·통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다.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들은 각 직무 및 책임에 따라 수출 관리·통제 업무를 분담한다.

국가는 수출 관리·통제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수출 관리·통제 업무의 중대한 사항에 총괄적으로 협조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수출 관리·통제 전문가 자문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수출 관리·통제 업무를 위한 자문 및 의견을 제공하도록 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적절한 시기에 관련 업종 수출 관리·통제 가이드를 발표하고, 수출업자가 수출 관리·통제에 대한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규범을 수립하고 경영하도록 안내한다.

<p>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负责出口管制有关工作。</p>	<p>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출 관리·통제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p>第六条 国家加强出口管制国际合作，参与出口管制有关国际规则的制定。</p>	<p>제 6 조 국가는 수출 관리·통제 국제합작을 강화하고, 수출 관리·통제 관련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한다.</p>
<p>第七条 出口经营者可以依法成立和参加有关的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 有关商会、协会等行业自律组织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章程对其成员提供与出口管制有关的服务，发挥协调和自律作用。</p>	<p>제 7 조 수출업자는 법에 따라 관련 상공회의소·협회 등 업종별 자율조직을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상공회의소·협회 등 업종별 자율조직은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관에 따라 구성원에게 수출 관리·통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조성과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한다.</p>
<p>第二章 管制政策、管制清单和管制措施</p>	<p>제 2 장 관리·통제 정책, 관리·통제 목록과 관리·통제 조치</p>
<p>第一节 一般规定</p>	<p>제 1 절 일반 규정</p>
<p>第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出口管制政策，其中重大政策应当报国务院批准，或者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p>	<p>제 8 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 관리·통제 정책을 제정하며, 그 중에서 중요한 정책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p>

准。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管制物项出口目的国家和地区进行评估，确定风险等级，采取相应的管制措施。

第九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据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根据出口管制政策，按照规定程序会同有关部门制定、调整管制物项出口管制清单，并及时公布。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出口管制清单以外的货物、技术和服务实施临时管制，并予以公告。临时管制的实施期限不超过二年。临时管制实施期限届满前应当及时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决定取消临时管制、延长临时管制或者将临时管制物项列入出口管制清单。

받거나,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통제대상 품목의 수출 목적지인 국가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여 리스크 등급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이 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수출 관리·통제 정책에 근거하여 규정된 절차대로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하여 수출 관리·통제 목록을 정하거나 조정하고 이를 적시에 공표한다.

국가 안전과 이익의 유지·보호와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요구사항의 이행에 근거하여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국무원 비준 또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아서 수출 관리·통제 목록 외의 화물·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 관리·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임시 관리·통제 조치의 시행 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임시 관리·통제 시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시에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임시 관리·통제 결정을 취소 또는 연장하거

第十条

根据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需要，经国务院批准，或者经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可以禁止相关管制物项的出口，或者禁止相关管制物项向特定目的国家和地区、特定组织和个人出口。

第十一条

出口经营者从事管制物项出口，应当遵守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依法需要取得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的，应当取得相应的资格。

第十二条

国家对管制物项的出口实行许可制度。

出口管制清单所列管制物项或者临时管制物项，出口经营者应当

나, 임시 조치가 적용되었던 물품 및 항목을 수출 관리·통제 목록에 넣도록 한다.

제 10 조

국가 안전과 이익의 유지·보호와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요구사항의 이행에 근거하여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국무원 비준 또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아서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하여 관련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관련 통제대상품목을 특정 국가·지역·조직·개인에게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이 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관련 관리·통제 물품 수출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국가는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수출 관리·통제 목록에 포함되는 통제대상품목 또는 임시 관리·통

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许可。

出口管制清单所列管制物项以及临时管制物项之外的货物、技术和服务，出口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或者得到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通知，相关货物、技术和服务可能存在以下风险的，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许可：

- (一) 危害国家安全和利益；
- (二) 被用于设计、开发、生产或者使用大规模杀伤性武器及其运载工具；
- (三) 被用于恐怖主义目的。

出口经营者无法确定拟出口的货物、技术和服务是否属于本法规定的管制物项，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咨询的，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应当及时答复。

第十三条

제 조치 대상인 물품 및 항목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 관리·통제 목록에 포함되는 통제대상품목 또는 임시 관리·통제 조치 대상인 물품 및 항목 이외의 화물·기술·서비스 수출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수출업자가 알고 있었거나, 의무적으로 알았어야 하거나, 국가수출통제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수출업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 (2) 대량살상무기 및 이를 탑재하는 운반수단의 설계·개발·생산·사용에 쓰이는 경우
- (3) 테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화물·기술·서비스가 이 법에 규정된 통제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어서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적시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13 조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综合考虑下列因素，对出口经营者出口管制物项的申请进行审查，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

- (一) 国家安全和利益；
- (二) 国际义务和对外承诺；
- (三) 出口类型；
- (四) 管制物项敏感程度；
- (五) 出口目的国家或者地区；
- (六) 最终用户和最终用途；
- (七) 出口经营者的相关信用记录；
- (八) 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因素。

第十四条

出口经营者建立出口管制内部合规制度，且运行情况良好的，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对其出口有关管制物项给予通用许可等便利措施。具体办法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规定。

第十五条

出口经营者应当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交管制物项的最终用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업자의 통제대상품목 수출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1) 국가안전과 이익
- (2) 국제의무와 대외협약
- (3) 수출 유형
- (4) 통제대상품목 민감도
- (5) 수출 목적지인 국가 또는 지역
- (6)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 (7) 수출업자의 신용과 관련된 기록
- (8)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요소

제 14 조

수출업자가 수출 관리·통제 내부준법제도를 수립하고 그 제도 운영을 양호하게 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해당 관련 통제대상품목의 수출에 대하여 일반허가 등 간편 조치를 취하여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수출통제관리부가 정한다.

제 15 조

수출업자는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

户和最终用途证明文件，有关证明文件由最终用户或者最终用户所在国家和地区政府机构出具。

第十六条

管制物项的最终用户应当承诺，未经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允许，不得擅自改变相关管制物项的最终用途或者向任何第三方转让。

出口经营者、进口商发现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有可能改变的，应当按照规定立即报告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

第十七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建立管制物项最终用户和最终用途风险管理制度,对管制物项的最终用户和最终用途进行评估、核查，加强最终用户和最终用途管理。

第十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对有下列

와 최종 용도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의 소재지인 국가 및 지역의 정부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 16 조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수출통제관리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련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출업자와 수입자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즉시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통제대상품목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하여 평가·심사를 하고,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 18 조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다음 각

情形之一的进口商和最终用户，
建立管控名单：

- (一) 违反最终用户或者最终用途管理要求的；
- (二) 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
- (三) 将管制物项用于恐怖主义目的的。

对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和最终用户，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采取禁止、限制有关管制物项交易，责令中止有关管制物项出口等必要的措施。

出口经营者不得违反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出口经营者在特殊情况下确需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的，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申请。

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经采取措施，不再有第一款规定情形的，可以向国家出口管制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한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대하여 관리·제한 명단을 작성한다.

- (1)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에 관련된 관리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통제대상품목이 테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관리·제한 명단에 입력된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대하여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관련 통제대상품목의 거래에 대한 금지 조치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통제대상품목의 수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제한 명단에 입력된 수입자·최종 사용자·최종 용도와 관련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출업자가 특수한 상황 하에 관리·제한 명단에 입력된 수입자·최종 사용자와 거래하여야만 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제한 명단에 입력된 수입자·최종 사용자가 조치를 적용받은 뒤 제 1 관에 규정된 상황이

管理部门申请移出管控名单；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决定将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移出管控名单。

第十九条

出口货物的发货人或者代理报关企业出口管制货物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

出口货物的发货人未向海关交验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海关有证据表明出口货物可能属于出口管制范围的，应当向出口货物发货人提出质疑；海关可以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提出组织鉴别，并根据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作出的鉴别结论依法处置。在鉴别或者质疑期间，海关对出口货物不予放行。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제한 명단에서 빼출 것을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요청할 수 있다. 국가수출통제관리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리·제한 명단에 입력된 수입자·최종 사용자를 관리·제한 명단에서 빼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19 조

수출 화물 송하인 또는 세관신고 대행업체가 통제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국가수출통제관리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수출 화물 송하인이 국가수출통제관리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출 화물이 수출 관리·통제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세관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 수출 화물 송하인에게 세관은 질의할 수 있다. 세관은 국가수출통제관리부에 해당 조직에 대한 감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수출통제관리부가 감별한 결과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감별 기간 또는 질의 기간 중에 세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통관시키지 아니한다.

第二十条

任何组织和个人不得为出口经营者从事出口管制违法行为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

第二节 两用物项出口管理

第二十一条

出口经营者向国家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出口两用物项时，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如实提交相关材料。

第二十二条

国家两用物项出口管制管理部门受理两用物项出口申请，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依照本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两用物项出口申请进行审查，并在法定期限内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作出准予许可决定的，由发证机关统一颁发出口许可证。

제 20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수출업자에게 수출 관리·통제 법령을 위반하여 대행·화물 운송·배달·세관신고·제 3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이중용도품목 수출 관리

제 21 조

수출업자는 이중용도품목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에 이중용도품목 수출을 신청하는 때에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중용도품목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이중용도품목 수출 신청을 접수한 뒤 이 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수출 신청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하여 심사하고, 법정기한 안에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해주는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허가증도 교부한다.

第三节 军品出口管理

第二十三条

国家实行军品出口专营制度。从事军品出口的经营者，应当获得军品出口专营资格并在核定的经营范围内从事军品出口经营活动。

军品出口专营资格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审查批准。

第二十四条

军品出口经营者应当根据管制政策和产品属性，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办理军品出口立项、军品出口项目、军品出口合同审查批准手续。

重大军品出口立项、重大军品出口项目、重大军品出口合同，应当经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审查，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

제 3 절 군용물 수출 관리

제 23 조

국가는 군용물 수출에 대하여 전문경영제도를 시행한다. 군용물 수출업자는 군용물 수출전문경영자격을 획득한 뒤 심사로 결정된 경영범위 안에서 군용물 수출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군용물 수출전문경영자격은 국가 군용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가 심사 및 비준을 한다.

제 24 조

군용물 수출업자는 수출통제정책과 제품 속성에 근거하여 국가 군용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에 군용물 수출 항목 등록·군용물 수출 항목·군용물 수출 계약 심사 및 비준 절차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요 군용물 수출 항목 등록·중요 군용물 수출 항목·중요 군용물 수출 계약은 국가 군용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하여 심사하고,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도록 한다.

第二十五条

军品出口经营者在出口军品前，应当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申请领取军品出口许可证。

军品出口经营者出口军品时，应当向海关交验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颁发的许可证件，并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报关手续。

第二十六条

军品出口经营者应当委托经批准的军品出口运输企业办理军品出口运输及相关业务。具体办法由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第二十七条

军品出口经营者或者科研生产单位参加国际性军品展览，应当按照程序向国家军品出口管制管理部门办理审批手续。

제 25 조

군용물 수출업자는 군용물을 수출하기 전에 국가 군용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에 군용물 수출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군용물 수출업자는 군용물 수출을 하는 때에 국가수출통제관리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제 26 조

군용물 수출업자는 비준받은 군용물 수출운수기업을 통하여 군용물 수출운수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군용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가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정한다.

제 27 조

군용물 수출업자 또는 과학연구·생산사업주가 국제방위산업전람회에 참여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국가 군용물 수출을 담당하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에 심사를 진행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第三章 监督管理

第二十八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对管制物项出口活动进行监督检查。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调查，可以采取下列措施：

(一) 进入被调查者营业场所或者其他有关场所进行检查；

(二) 询问被调查者、利害关系人以及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三) 查阅、复制被调查者、利害关系人以及其他有关组织或者个人的有关单证、协议、会计账簿、业务函电等文件、资料；

(四) 检查用于出口的运输工具，制止装载可疑的出口物项，责令运回非法出口的物项；

(五) 查封、扣押相关涉案物项；

(六) 查询被调查者的银行账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28 조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통제대상 품목 수출활동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하고 검사한다.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받는 자의 영업장 또는 그 밖에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조치

(2) 조사받는 자·이해관계인·관련이 있는 그 밖의 조직 및 개인에게 질의를 하는 때에 조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

(3) 조사받는 자·이해관계인·관련이 있는 그 밖의 조직 및 개인과 관련된 문서·계약서·회계장부·업무문서함 등의 문서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조치

(4) 수출에 쓰이는 운송수단을 조사하고, 의심되는 수출 물품 및 항목을 적재하는 것을 제지하고, 불법 수출 물품 및 항목을 반송하도록 하는 조치

(5) 관련 사건에 연루된 물품 및 항목을 봉인·압수하는 조치

(6) 조사받는 자의 은행 계좌

<p>户。 采取前款第五项、第六项措施，应当经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负责人书面批准。</p> <p>第二十九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履行职责，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予以协助。</p> <p>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单独或者会同有关部门依法开展监督检查和调查工作，有关组织和个人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碍。</p> <p>有关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对调查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p> <p>第三十条 为加强管制物项出口管理，防范管制物项出口违法风险，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采取监管谈话、出具警示函等措施。</p>	<p>를 조회하는 조치 앞 관의 제 5 항·제 6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가 수출통제관리부 책임자의 서면 비준을 받아야 한다.</p> <p>제 29 조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 및 책임을 이행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법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상의하여 감독 및 검사와 조사 업무를 하고, 관련 조직 및 개인은 이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관련 국가기관 및 그 업무자는 조사 중에 알게 된 국가기밀·영업비밀·개인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p> <p>제 30 조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통제대상품목 수출의 법령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구두로 주의·훈계를 주거나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p>
----------------------------------------------------------------------------------------------------------------------------------------------------------------------------------------------------------------------------------------------------------------------------------------------------------------------------	------------------------------------------------------------------------------------------------------------------------------------------------------------------------------------------------------------------------------------------------------------------------------------------------------------------------------------------------------------------------------------------------------------------------------------------------------------------------------------------------------------------------------------

第三十一条

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任何组织和个人有权向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举报，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并为举报人保密。

第三十二条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根据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按照平等互惠原则，与其他国家或者地区、国际组织等开展出口管制合作与交流。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组织和个人向境外提供出口管制相关信息，应当依法进行；可能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不得提供。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三条

出口经营者未取得相关管制物项的出口经营资格从事有关管制物项出口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

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1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모든 조직 및 개인은 국가 수출통제관리부에 신고하며,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신고받은 뒤 법에 따라 적시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제 32 조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또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지역·국제조직 등과 수출 관리·통제에 대하여 협력하고 교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의 조직 및 개인이 국경 밖의 수출 관리·통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33 조

수출업자가 통제대상항목에 관련된 수출업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련 통제대상항목을 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경고를

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

第三十四条

出口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 (一) 未经许可擅自出口管制物项；
- (二) 超出出口许可证件规定的许可范围出口管制物项；
- (三) 出口禁止出口的管制物

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

수출업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받을 때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휴업·정비를 하도록 명령하고, 통제대상항목에 관련된 수출업 자격을 취소한다.

-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대상항목을 무단으로 수출하는 경우
- (2) 수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통제대상항목을 수출하는 경우
- (3) 수출이 금지된 통제대상

<p>项。</p> <p>第三十五条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获取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或者非法转让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的，撤销许可，收缴出口许可证，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二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二十万元的，并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罚款。</p> <p>伪造、变造、买卖管制物项出口许可证件的，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上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p> <p>第三十六条 明知出口经营者从事出口管制违法行为仍为其提供代理、货运、寄递、报关、第三方电子商务交易平台和金融等服务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p>	<p>항목을 수출하는 경우</p> <p>제 35 조 사기·뇌물 등 부정한 수단으로 통제대상항목 수출허가증을 획득하는 경우, 또는 통제대상항목 수출허가증을 불법으로 이전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수출허가증을 반납받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2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20 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통제대상항목 수출허가증을 위조·변조·매매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이 때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미만인 경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 36 조 수출업자가 수출 관리·통제 위법행위임을 명확하게 알고도 대행·화물 운송·배달·세관신고·제 3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p>
------------------------------------------------------------------------------------------------------------------------------------------------------------------------------------------------------------------------------------------------------------------------------------------------------------------------------------------------------------------------------------------------	------------------------------------------------------------------------------------------------------------------------------------------------------------------------------------------------------------------------------------------------------------------------------------------------------------------------------------------------------------------------------------------------------------------------------------------------------------------------------------------------------------------------------------------------------------------------------------

法所得，违法经营额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三倍以上五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十万元的，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第三十七条

出口经营者违反本法规定与列入管控名单的进口商、最终用户进行交易的，给予警告，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十倍以上二十倍以下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十万元的，并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第三十八条

出口经营者拒绝、阻碍监督检查的，给予警告，并处十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

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1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10 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7 조

수출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제한 명단에 입력된 수입자·최종 사용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경고를 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이 50 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 만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휴업·정비를 하도록 명령하고, 통제대상 항목에 관련된 수출업 자격을 취소한다.

제 38 조

수출업자가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경고를 하고 10 만 위안 이상 30 만 위안

的, 责令停业整顿, 直至吊销相关管制物项出口经营资格。

第三十九条

违反本法规定受到处罚的出口经营者, 自处罚决定生效之日起,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可以在五年内不受理其提出的出口许可申请; 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可以禁止其在五年内从事有关出口经营活动, 因出口管制违法行为受到刑事处罚的, 终身不得从事有关出口经营活动。

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依法将出口经营者违反本法的情况纳入信用记录。

第四十条

本法规定的出口管制违法行为, 由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进行处罚; 法律、行政法规规定由海关处罚的, 由其依照本法进行处罚。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휴업·정비를 하도록 명령하고, 통제대상항목에 관련된 수출업 자격을 취소한다.

제 39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수출업자에 대하여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처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그 수출업자가 제출하는 수출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무 담당자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그 밖의 사람이 앞에서 말하는 5년 동안 수출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수출 관리·통제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수출업 관련 활동에 평생 다시는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 수출통제관리부는 수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법에 따라 신용 기록에 기입한다.

제 40 조

이 법에서 규정된 수출 관리·통제 위법행위는 국가 수출통제관리부가 처벌을 담당한다. 세관이 처벌을 담당하도록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第四十一条

有关组织或者个人对国家出口管制管理部门的不予许可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决定为最终裁决。

第四十二条

从事出口管制管理的国家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的，依法给予处分。

第四十三条

违反本法有关出口管制管理规定，危害国家安全和利益的，除依照本法规定处罚外，还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处理和处罚。

违反本法规定，出口国家禁止出口的管制物项或者未经许可出口管制物项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组织和个人，违反本法有关出口管制管理

제 41 조

관련 조직 및 개인이 수출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국가 수출통제 관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 결정을 최종 재결로 한다.

제 42 조

수출 관리·통제 관리에 종사하는 국가 업무담당자가 직무유기·사리사욕 추구·직권남용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43 조

이 법의 수출 관리·통제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른 처리와 처벌도 하여야 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대상항목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대상항목을 수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의 조직과 개인이 이 법의 수출 관리·통

规定, 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和利益, 妨碍履行防扩散等国际义务的, 依法处理并追究其法律责任。

제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고, 무기확산방지 등 국제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도 추궁한다.

第五章 附则

제 5 장 부칙

第四十五条

제 45 조

管制物项的过境、转运、通运、再出口或者从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殊监管区域和出口监管仓库、保税物流中心等保税监管场所向境外出口, 依照本法的有关规定执行。

통제대상항목을 통관·환적·운송·재수출·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과 수출감독관리창고·보세물류센터 등 보세감독관리장소로부터 국경 밖으로 수출하는 것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第四十六条

제 46 조

核以及其他管制物项的出口, 本法未作规定的, 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핵물질과 그 밖의 통제대상항목의 수출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 법률·행정부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第四十七条

제 47 조

用于武装力量海外运用、对外军事交流、军事援助等的军品出口, 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执行。

무장역량의 해외 사용·대외 군사 교류·군사 지원 등의 용도로 군용물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47 조에서 말하는 "武装力量"이란 무장역량(armed forces)이다.



第四十八条

任何国家或者地区滥用出口管制措施危害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和利益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对等采取措施。

第四十九条

本法自 2020 年 12 月 1 日起施行。

제 48 조

통제대상품목 수출을 남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끼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동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9 조

이 법은 2020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